



시간제등록제 운영 규정

규정 번호	3-2-5
제정일자	2011.11.21
개정일자	2017.04.14
책임부서/팀·계	평생교육원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6조의2에 의거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(이하 "시간제 등록생"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등록자격)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. 다만, 대학(교)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.

제3조(선발방법) ①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선발방법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 전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공고한다.

제4조(선발인원) ①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. 단, 전문인을 양성하는 의학·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을 제외한다.

② 시간제 등록생은 우리 대학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(통합반)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(별도반)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.

③ 전항의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2015.11.25. 개정>

제5조(등록 및 수강신청) ① 시간제 등록생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간제 등록생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은 총장이 정하는 학점 당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한 학점에 의하여 계산한다.

제6조(수업 및 재학연한) 시간제등록생과정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제7조(교육과정) 시간제 등록생의 교육과정은 신청한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른다.

제8조(이수학점, 학점 당 이수시간 및 수업방법) ① 시간제 등록생이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시간제등록생의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시간제 등록생의 수업은 해당학과의 학생들과 동시에 수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분반을 구성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다.

제9조(학위수여) ① 시간제 등록생으로 등록하여 우리대학 동일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 이상이고, 학점인정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과 합산하여 80학점 이상 일 때에는 당해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② 학위종별은 학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.

③ 학위수여 절차 및 요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장학금) ①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간제등록제과정의 장학금 종류별 지급기준 및 금액은 <별표 1>와 같으며, 따로 정하는 경우 시간제 등록생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<2017.4.14. 신설>

제11조(준용)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과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4조(선발인원) 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시간제 등록생 선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